

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88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1998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사유

『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』가 상위법령인 『지방재정법시행령』과 『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』에 저촉되어 일부조문을 정비하고 아울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수탁운영중인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전대 또는 권리처분 행위 방지조문 삽입(제4조)
- 공유재산 및 기부채납재산 무상사용에 관한 일부조문을 정비(제5조)
 - 무상사용기간을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기부채납 재산가액을 연간 임대료액으로 나눈 연수로 하고 그 이후 부터는 유상으로 사용

□ 근거법령 : 따로붙임
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(기부재산의 사용허용)
-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2조, 44조(무상사용기간, 전대행위)

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.

②체육회장은 수탁운영중인 재산에 대하여는 타인또는 법인에게 전대 및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.

제5조를 다음과같이 한다.

제5조(운영지원) ①도지사는 지방재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관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출연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충청북도 공유재산 및 기부채납 재산을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무상사용기간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기부채납재산의 가액을 연간임대료액으로 나눈 연수로 하고 그 이후 부터는 유상으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이조례는 공포한날 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이조례 시행전에 회관운영에 관하여 처리한사항은 이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